

2021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을 위한 7개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1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결과 일몰해제된 규제의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 등 7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1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일몰해제된 3개 부령의 규제조문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부령에 대해서는 신규로 일몰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021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을 위한 7개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일부개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등 7개 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2항 제13호를 삭제한다.

제2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제5조 제5항에

다른 변경등록 신고 : 2022년 1월 1일

제5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의2에 따른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 2022년 1월 1일

제6조(「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 2022년 1월 1일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심사의 기한 : 2022년 1월 1일

제7조(「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조에 따른 구호용구 사용교육 내용 보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1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81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 및 평가의 주기: 2015년 1월 1일	<u><삭 제></u>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35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의26제1항 및 별표 3의9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 2015년 1월 1일	<u><삭제></u>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50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의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 2015년 1월 1일	<u><삭 제></u>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5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제5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 2022년 1월 1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제48조의2에 따른 건축물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 2022년 1월 1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 2022년 1월 1일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심사의 기한 : 2022년 1월 1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제7조에 따른 구호용구 사용 교육 내용 보관